

교육과정 품질 평가 규정

제 정 : 2017. 6. 20.

개 정 : 2018. 5. 21.

개 정 : 2020. 2. 1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교육과정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품질평가) ① 교육의 질 개선 및 합리적인 교육과정 개편을 위하여 교육과정 품질 평가를 시행한다.

② 전공 교육과정 품질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, 전공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.

③ 교양 교육과정 품질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,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은 교양교육센터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20. 2. 17>

④ 강의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, 강의평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은 강의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한다.

제3조(평가지기) ① 교육과정 품질 평가는 매 학년도 말에 실시한다.

②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매학기 1회 이상 수업개선 중간 평가 CQI[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]를 시행한다.

제4조(교육과정품질평가위원회) ① 교육과정 품질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정 품질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재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역할) 교육과정품질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.

1. 교육과정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평가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평가 결과 활용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과정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환류) ① 교육과정품질평가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반영되도록 한다.

1.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및 수정
2. 대학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및 지표개선
3. 교육과정 개편 등 학사 운영 정책 개선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